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07일까지 신고 바랍니다.
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.

지정면행정복지센터 담당자 : 변혜민

문의전화 : 033-737-5621

성명 생년월일	주소	지연 신고사항
고 *필 1983-11-11	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	무단전출
이 *정 2004-06-18	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조엄로	무단전출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3항)

2026년 09월 30일

지정면장

